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060-14



서로를 위한 약속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개정판

서로를 위한 약속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 개정판 |



# 일러두기

## ▶ 발간 목적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이 매뉴얼은 학교규칙 중 주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개념과 의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와 운영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예시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간소화, 부적절한 예시 자료 수정 및 대체, 개정 법령에 따른 내용 수정,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상황 반영, 제·규정의 적용시 유의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교규칙을 정비하고,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활용 방법

이 매뉴얼은 학교규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 최근의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의 절차와 운영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등은 하나의 제안이므로 단위학교에서 현장의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학교규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활동,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등에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와 학교문화개선연구 선도학교 홈페이지(<http://school.ny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CONTENTS

## 제 1장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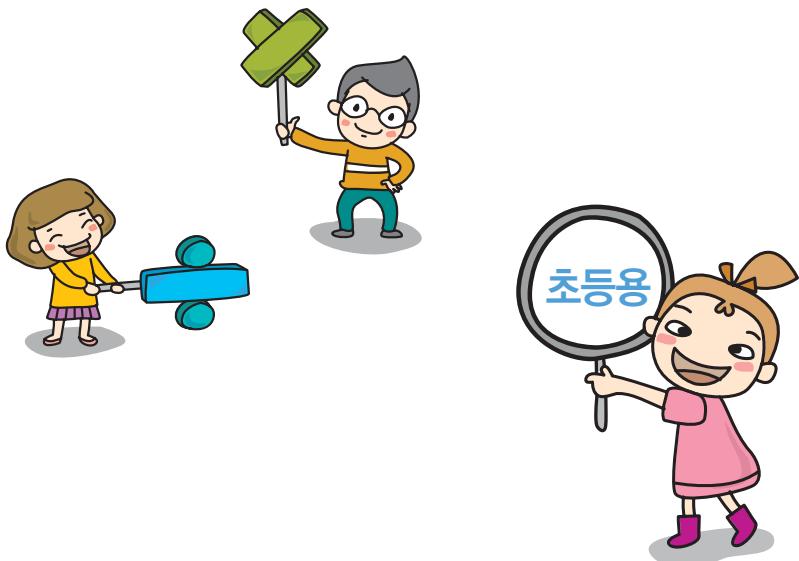
1. 학교규칙의 개념 | 9
2. 학교규칙의 의의 | 10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 11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12

## 제 2장 학교규칙 제·개정 | 13

1.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15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16
3.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 18
  -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18
  -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 19
  -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 22
  - 4) 시안 마련 | 28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9
  - 6)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29
  - 7)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홍보 | 30
  - 8) 적용 및 환류 | 31
4. 학교규칙 준수·실천 방안 | 32

## 제3장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41

1.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 43
2. 소지품 검사 규정 | 47
3.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50
4.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68
5.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 70
6. 교육별 | 81
7. 학급자치법정 | 88
8. 어린이 법제관 | 96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 100





## 제 1 장

#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1 학교규칙의 개념

2 학교규칙의 의의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제 1 장

##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 1.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                  |              |  |
|------------------|--------------|--|
| 학<br>교<br>규<br>칙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br>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br>3.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br>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br>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br>6.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br>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
|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br>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br>9. 학교규칙 개정절차                                   |

## 2. 학교규칙의 의의

### ▣ 학교운영의 근간

-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 ▣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증대

- 학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지도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 개정 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2012. 3. 21. 개정>

###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본적 절차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전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 후

제9조 ④ \_\_\_\_\_  
\_\_\_\_\_  
\_\_\_\_\_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013. 2. 15. 개정>

###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규칙에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 교사는 학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미리 안내·홍보하고, 개인에 차별을 두지 않게 적용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 학생

-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제한할 수 있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 ▣ 교원

-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활동의 제도적 장치이다.
- 학칙은 상·벌 등 학생교육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 학칙은 학생이 행복하고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학칙의 효과적인 운영은 교원의 책임이다.

### ▣ 학부모

-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 학칙은 학생교육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 02

## 제 2 장

### 학교규칙 제 · 개정

- 1 학교규칙 제 · 개정 원칙
- 2 학교규칙 제 · 개정 절차 개요
- 3 학교규칙 제 · 개정 세부 절차
- 4 학교규칙 준수 · 실천 방안





# 제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제  
2  
장

## 1.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학교장은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학교규칙이 전환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시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학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 3.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방법 및 내용

- 원칙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한다.

##### 구 성 및 역할

| 구 성   | 역 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전교 학생회장단 임원의 일부도 제·개정 위원이 될 수 있다.</li><li>•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li><li>•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li><li>•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li><li>• 개정 시안 수립</li><li>•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li><li>•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li></ul> |

##### 유의사항

- 제·개정위원회는 학년·학기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급 등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다.

- 학생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 등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며,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

##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다.

#### (1) 학생의 발의(학생회를 통한 발의)

어린이회(학급회)에서  
규칙 제·개정 건의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제·개정 건의 안 채택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 제출

- 학생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 매뉴얼 제3장 3.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참조)
- 학급회의, 학급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제·개정 절차 초기부터 학생들의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학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개정 건의, 운영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신문고’나 ‘우체통’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소규모 학생의 경우에는 학급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활용

법제처는 학생의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 및 학교 생활에서 겪는 법과 제도를 학생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고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어린이 법제관(초등학교 4~6학년), 2012년부터 청소년 법제관(중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칙 제 · 개정 과정의 학생 참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운영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http://www.moleg.go.kr/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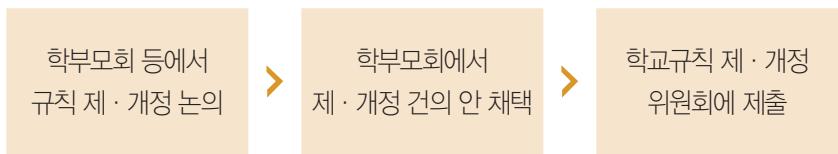
※ 참고 : 학교폭력 근절 종합포털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교육부와 법제처는 학교폭력 예방 · 진단 및 사후 대응방법과 관련 법령, 교육자료 등을 탑재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사이트 ‘스쿨로’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칙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건의하고,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학생자치제도이다.

- ① 학급에서 1~2명씩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 또는 총학생회 조직 내에 옴부즈맨 부서를 신설하고 부원을 배치하여 활동한다.
- ② 학급에서 학생 간의 분쟁, 불합리한 학칙 규정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권 및 교권 침해 등 사례를 수집한다.
- ③ 월 1회 학생 옴부즈맨 학년회의를 개최하여 수집한 사례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학교에 건의한다.
- ④ 학생회장단과 학교장의 정례모임을 통하여 학교생활지도 규칙을 개정하거나 학교차원에서 시정 조치할 내용을 건의한다.

## (2) 학부모의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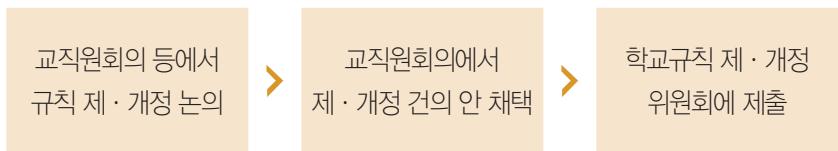


- 학부모 의견은 다양한 방법(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다.
- 건의안에 대한 정족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Tip 학부모회, 아버지회,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과 학칙 제·개정

- ① 학부모회 등은 학교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② 학부모회 등은 운영 약관에 따라 월별, 분기별 모임을 가지며,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칙 제·개정안을 채택하여 제·개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3) 교원의 발의



- 교원은 교직원회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학부모, 교원에 의한 발의는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제·개정안 발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지나치게 잦은 개정 발의는 지양하도록 한다.
- 학년말에는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 방법 및 내용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방법 :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생 :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단, 의견수렴과정은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학생·학부모·교원 : 토론회 실시

## 유의사항

- 제·개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조항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 학생·학부모·교원 누구나 토론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Tip** 의견 수렴 방법

▶ 학생

학급 단위

- 학급회의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 토론회

학년 단위

- 학년 토론회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총학생회

- 학생회 토론회

학생(안)

▶ 교원

• 부서별, 학년별,  
과목별 협의회

• 교직원 회의

교원(안)

▶ 학부모

• 학부모 총회  
•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회신,  
홈페이지 의견 수렴)

학부모(안)

▶ 학생·교원·학부모

• 토론회

공동(안)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시 1〉 학부모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모으는 방법

- 학부모회장 앞으로 우편 발송
- 이메일 제출
- 학부모회에 직접 제출

##### 〈예시 2〉 담임선생님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방법

- 우편, 이메일, 학생을 통한 제출 등 안내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질 츄 선>-----

#### ○○학년도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학년 ( )반 학생 이름 ( )  
학부모 이름 ( )

| 관련조항 | 의견 | 비고 |
|------|----|----|
| 제○조  |    |    |
| 제○조  |    |    |

○○초등학교장 귀하

## 사례1

##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설문지(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규칙이란 학교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학교규칙에 대해서 어린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골라  표 해주시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학교규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번호            | 【학교규칙 제 · 개정】   | 예 | 아니오 |
|---------------|---|---|-----|
| 1             | 학교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   |     |
| 2             | 우리는 전교어린이회이나 그 이외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도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예: 학급어린이회, 설문조사, 토론회, 학교신문고, 학교홈페이지 등) |   |     |
| 3             | 우리 학교는 학교구성원이 제 ·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   |     |
| 4             | 학년 초에 학교규칙에 대한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   |     |
|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   |     |
| 5             | 학생의 징계나 그 밖의 지도방법이 학교규칙이 정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     |
| 6             | 소지품 검사는 학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   |     |
| 7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예: 테블릿 PC 게임기기, MP3 등) 사용규정에 학교규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                                     |   |     |
| 8             | 학급어린이회와 전교어린이회가 학교규칙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   |     |
| 9             | 우리 학교규칙에서 특히 만족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10

우리 학교규칙과 운영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우리 학교규칙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출처 : 허종렬 외(2012).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p. 94-96.

## 사례 2

###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한 의견 수렴 방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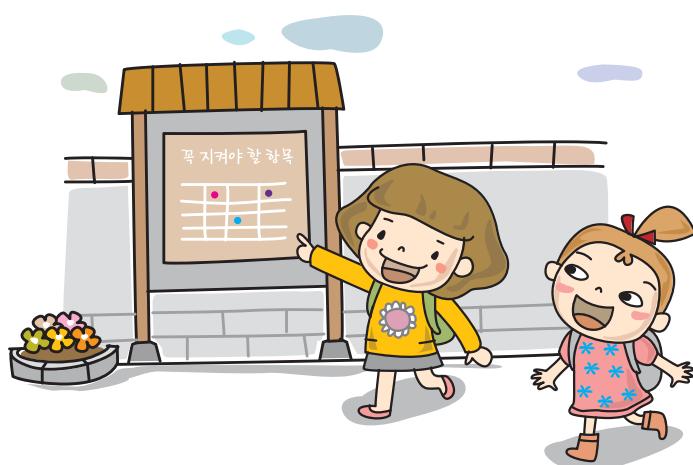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규칙 제정은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 학생

- 상점 항목 및 배점, 벌점 항목 및 배점을 열거한 후 A1크기로 출력하여 교문 등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각 항목과 배점에 대해 동의하는 칸에 스티커를 붙인다.

#### ▶ 교원

- 같은 방법으로 학교 식당에 게시한 후 스티커를 붙인다.



##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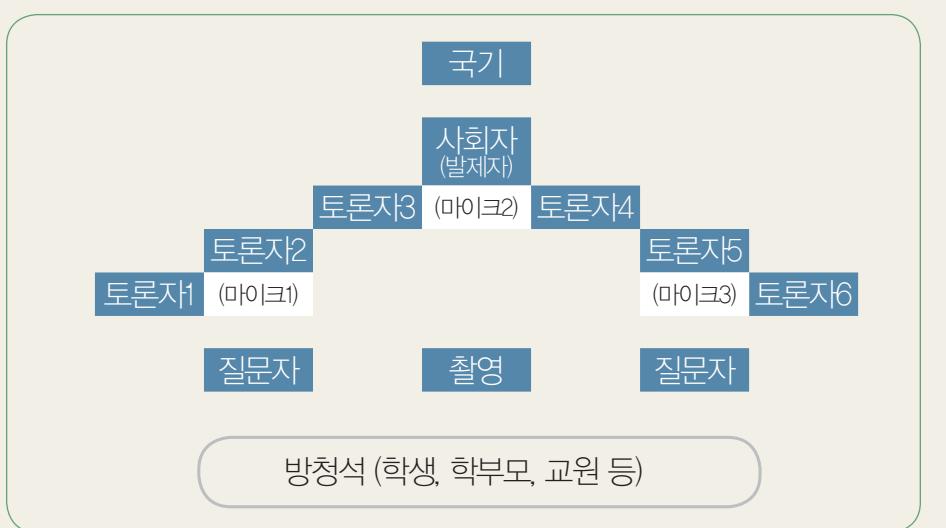
## 토론회 순서

## ▶ 사회 : 어린이회장

|    | 순서  | 주관          | 주요내용         |
|----|---|-------------|--------------|
| 준비 | 토론회 기초 자료 준비 및 발제                                 | 제 · 개정 위원회  |              |
|    | 토론회 관련 교육   | "           | 동영상 상영       |
| 1  | 토론회 개회 선언   | 사회자         |              |
| 2  | 국민의례  | "           |              |
| 3  |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취지 안내                                 | "           |              |
| 4  | 토론자 및 내빈 소개                                       | "           |              |
| 5  | 인사소개(토론자)   | "           |              |
| 6  | 학칙 개정안 관련 발제                                      | 발제자         | 발표5분         |
| 7  | 학칙 개정 사유 및 필요성 설명 반대의견 발제<br>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 의견 발표 | 토론자,<br>사회자 | 발표 3분<br>/1인 |
| 8  | 자유로운 질의응답<br>(토론자 간, 토론자와 방청객 간)                  | 사회자         | 20분 정도       |
| 9  | 토의 및 결론 도출  | 토론자,<br>사회자 | 발표 3분<br>/1인 |
| 10 | 토론회 폐회  | "           |              |
|    | 학칙개정안 확정  | 제 · 개정 위원회  |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공포                              | "           | 규칙 개정        |

### 예시3

### 토론회 좌석배치도



#### ▶ 좌석배치 유의사항

- 토론자 상호간과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을 방청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좌석을 곡선으로 설치하고, 토론회 성격에 알맞게 주변 환경을 구성한다.

## 4) 시안 마련

### ▣ 방법 및 내용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학칙 제·개정안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 유의사항

- 투표,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방법 및 내용

- 제 · 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 · 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6)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신입생, 전입생의 경우에 학교규칙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다.
-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7)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 홍보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설명회)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학칙 준수·실천을 위한 캠프 등을 실시한다.
-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 유의사항

- 학칙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학기)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칙 준수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및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한다.

## 8) 적용 및 환류

### 방법 및 내용

- 제 · 개정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 · 학부모 · 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 유의사항

- 학칙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 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학기말 또는 분기별로 반영한다.  
 ※ 학생 옴부즈멘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 모니터단, 홈페이지 의견수렴 매뉴얼 운영 등

### 예시4

#### 학교규칙 운영평가 체크리스트

- 학칙 제 ·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학교규칙 제 ·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학칙 제 · 개정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 학칙 제 · 개정시 적합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가?

##### 학칙 제 · 개정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UN아동권리협약 등

- 학칙에 인권 존중 태도 함양 및 인권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 되어 있는가?
- 학칙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 학칙 제 · 개정 절차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
- 학생회장단 및 학급 임원 선출 규정에 성적 또는 출결 관련, 사소한 징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조항은 없었는가?
-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학칙 제 · 개정시 교육공동체 합의 및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 되었는가?
- 학칙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였는가?

## 4. 학교규칙 준수 · 실천 방안

### 1) 확인서 받기

#### ▣ 의의

-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칙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은 학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 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입학식이나 개학식 등 신학년이 시작할 때 학생 · 학부모에게 학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 · 학부모에게 학칙을 알리기 전이나 알림과 동시에 학교의 교사들도 학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사례1

## 학교규칙 확인서(○○초등학교)

## [상점기준]

| 구 분           | 항목 | 긍정적 활동의 내용                     | 배점 |
|---------------|----|--------------------------------|----|
| 수업태도          | 1  | 야침활동 적극적 수행                    | 2  |
|               | 2  | 발표를 잘하고 수업태도가 모범적인 경우          | 2  |
| 일기쓰기          | 3  | 일기를 잘 썼을 경우                    | 2  |
| 과 제           | 4  | 과제를 잘 했을 경우                    | 2  |
| 독 서           | 5  | 책을 끝까지 읽은 경우                   | 2  |
| 5대<br>덕목실천    | 6  | 예절, 질서, 청결, 친절, 절제 등을 잘 실천한 경우 | 2  |
| 책임,선행         | 7  | 맡은 일을 잘 하였거나 착한 일을 한 경우        | 2  |
| 수상 또는<br>명예선양 | 8  |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5  |
|               | 9  | 학교상장 및 표창                      | 3  |
|               | 10 | 시·군·도·전국단위의상을 받은 경우            | 5  |
| 기 타           | 11 | 위 항목에 없으나 잘한 일                 | 2  |

## [벌점기준]

| 항목 | 부정적 행동의 내용            | 배점 |
|----|-----------------------|----|
| 1  | 다른 학생을 왕따시킨 경우        | -2 |
| 2  |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복도에서 뛴 경우 | -2 |
| 3  |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해를 가했을 경우 | -2 |
| 4  | 운동장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경우   | -2 |
| 5  |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 -2 |
| 6  | 기 타                   | -2 |

### [벌점반성활동]

| 항목 | 자구 노력 활동의 종류           | 배점 |
|----|------------------------|----|
| 1  | 운동장 청소 및 쓰레기 주워오기(30개) | 3  |
| 2  | 책 읽고 감상문 써오기           | 3  |
| 3  | 정해진 분량의 사랑의 편지 쓰기      | 3  |
| 4  | 자신이 정하거나 선생님이 시키는 봉사하기 | 3  |

### 〈학생·학부모 확인〉

○○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지도계획을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학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년 반 번 학 생 성명

서명

학부모 성명

서명

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Tip 학사달력을 활용한 학교규칙 홍보

학교규칙을 홍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학교규칙 내용을 담은 탁상형 학사달력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일례로 충북○○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방향과 교육활동 사진, 학교행사 일정,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교규칙 등의 내용을 담은 학사달력을 배포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학교규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례2

## 학생 · 학부모 확인서(미국 샤프스타운 고등학교 )

#### **학생 권리 및 의무사항 규정집 수령 확인증**

### 의 학부모/보호자님께

##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님께

여러분의 자녀는 학생 규정집을 한 권씩 받았으며 이것을 읽고 부모님께 전해 드리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 규정집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문이나 걱정되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적어서 담임교사에게 보내시거나 해결을 위해서 교감선생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이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을 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양식을 완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프스타운 고등학교 학교장 ○○○ 드림

학인증

샤프스타운 고등학교의 학생 권리 및 의무사항 규정집을 받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일자:

학 생: ○ 학년 ○ 반 ○ ○ ○ (학번: )

학부모/보호자 : (서명)

출처 : 서울시교육청(2007).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 2) 학교행사를 통한 공유(서약식 등)

### ◆ 의의

- 학칙 준수 서약식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학칙에 따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학칙이 중심이 되는 학교전통을 확립할 수 있다.
-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 ◆ 유의사항

-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에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학교규칙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 준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 예시1

## 학교규칙 준수 선언문

우리는 ○○초등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 학생 우리는 선·후배 및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준수한다.
- ▶ 학부모 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 ▶ 교원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년 ○월 ○일

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학교장 :

## 보도자료

## 학칙 준수 서약식 (○○초등학교)

○○초···‘학칙 준수 서약식’ 가져  
– 생활규범, 안전생활 규칙, 기본학습 방법 실천하기 등 다짐의 시간 –

○○초등학교(교장 ○○○)는 4일, 자랑스러운 학교전통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전교학생회장이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학칙에 대한 설명 및 ○○어린이 학교생활규범을 안내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와 함께 ‘나의 명예실천약속’을 선언했다. 특히 ‘○○어린이 학칙 준수 서약식’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생활규범 지키기, 안전생활규칙 지키기, 기본학습방법 실천하기, 매일 학습일기 쓰기’ 등의 실천 약속을 학생들이 직접 글로 써서 교장선생님께 실천 다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장은 “세계 제 1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칙 및 안전생활에 대한 노력을 학교공동체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호남교육, 2011.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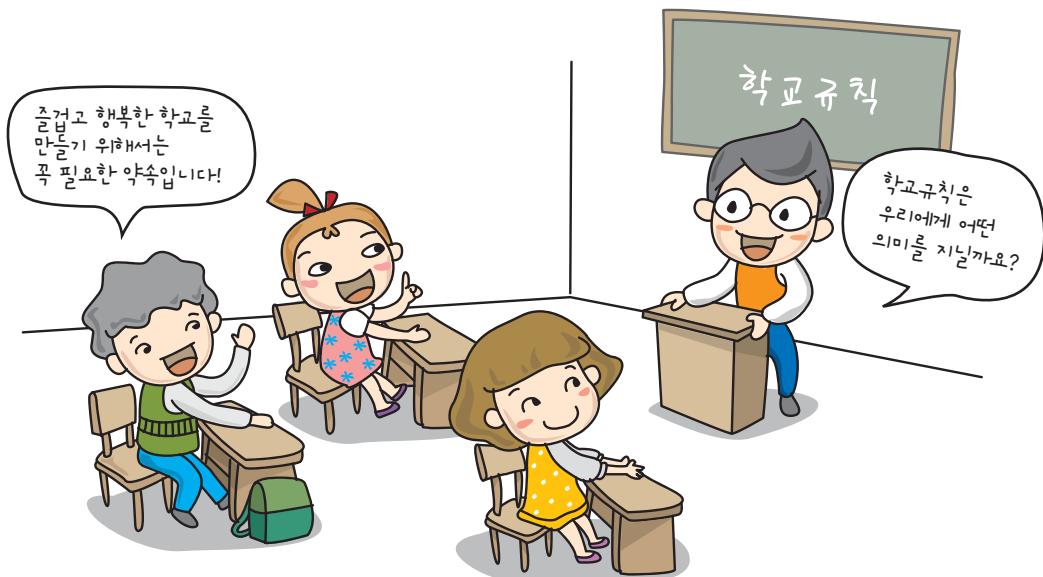
### 3) 교육활동과 연계

#### ◆ 의의

- 포스터나 만화, PPT, UCC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규칙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칙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 수업시간을 통해 학칙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 유의사항

-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영역 적용을 통해 학칙이 실천, 준수되도록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과 연계되도록 한다.



## 예시2

## '학교규칙'을 위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 계획

## ■ 목적

- 행복한 학교생활, 평화로운 교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과제의 하나로 학교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인다.
-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업혁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규칙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주요 방향

- 수업시간 중 학교규칙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할 연구팀을 구성한다.  
(공모, 학년별로 팀이 구성되면 가장 좋음)
- 프로젝트 수업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학교규칙 프로젝트 수업 연구팀'에서 결정하고, 각각 역할 분담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을 수업중에 실시한다.
- 3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4월초에 '학교규칙 프로젝트 수업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 실시한다.
-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은 전시도 하고, 학교규칙 공청회를 통해 종합, 발표한다.  
(종합보고서 책자 등은 방학중 작성, 인쇄함)

## ■ 세부 계획

| 주요 영역(선택)            | 관련 교과           | 수업중 주요 활동 내용(선택)  |
|----------------------|-----------------|---|
| 학교규칙 내용<br>관련 예술적 표현 | 음악, 미술,<br>체육 등 | 패러디, 홍보물, 포스터, 모자이크, 만화 등<br>다양한 음악적 표현, 조형물 제작 등           |
| 학교규칙 관련<br>글쓰기 수업    | 국어 등            | 에세이, 시, 체험수기, 노래가사 바꾸기, 콩트 대본<br>만들기 등                      |
| 학교규칙 관련<br>주제 토론 수업  | 사회, 도덕 등        | 학교규칙의 의미, 방향 등 미니 토론회, 인터뷰<br>보고서, PPT 만들기 설문지 만들기, 퀴즈만들기 등 |
| 동영상,<br>UCC 제작 실습    | 과학 등            | 관련 사진, 비디오 등을 모아 동영상 제작하기<br>(모둠별 활동 공모), 소품 만들기            |
| 영어로 표현하기             | 영어 등            | 학급, 학교규칙을 영어로 쓰고 말하기,<br>영어 노래 표현, 회화 대본 만들기                |
| 기타                   | 동아리 등           | 연극, 율동, 춤   |



# 03

## 제 3 장

###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1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 2 소지품 검사 규정
- 3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4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5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 · 벌점제)
- 6 교육별
- 7 학급자치법정
- 8 어린이 법제관
-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 제3장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1.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 ▣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 의의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MP3,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 적용시 유의점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정하되, 학교급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 시행 단계에서 상 · 벌점제에 의한 벌점 부과보다는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 자발적 홍보 캠페인활동 등을 통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바람직한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규칙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금지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 사례1

### 휴대전화 사용 지도사례(○○초등학교)

#### 1) 운영 목적

-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인 공공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킨다.

#### 2) 운영 절차

| 단계         | 주요 실천 내용  |
|------------|---|
|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조사</li> <li>▶ 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대한 설문 조사</li> <li>▶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토론회 개최</li> <li>▶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제정 및 공고</li> </ul> |
| 연수 ·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규정 홍보(홍보기간 운영 등)</li> <li>▶ '등하교 안심 알리미' 및 '원터치 SOS' 가입 활용 안내</li> </ul>   |
|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별 휴대전화 관리 상자 구입</li> <li>▶ 교내 콜렉트콜 전화기 설치</li> <li>▶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상담 지도</li> <li>▶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상벌점제 실시</li> </ul>                     |
| 학생 선도 및 표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어린이 표창(연 2회)</li> <li>▶ 생활반성조회 시 모범사례 및 우수학생 소개</li> </ul>   |

### 3) 적용의 실제

#### ① 준비 단계

-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본교의 특성과 비교 분석한다.
- 휴대전화 사용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 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학생 · 학부모 · 교사 협의회 결과를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제정한다.

#### ② 연수 및 홍보 단계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규정 제정과 시행 등을 홍보한다.
- '등하교 안심 알리미' 및 '원터치 SOS' 가입 활용을 안내한다.

#### ③ 시행 단계

-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등교 즉시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종례 후에 찾아가도록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첫 번째는 상 · 벌점제에 의한 벌점을 부과하며, 두 번째부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선도 단계

- 휴대전화 사용 예절지도를 통하여 관련 규정과 예절을 습득시킨다.
-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벌점 부과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제보나 학생의 불만 사례가 없도록 한다.

### 4) 적용상의 유의점

-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의 이해를 위하여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 휴대전화 사용 예절지도를 통하여 휴대전화 사용 전반에 대한 지도를 병행한다.
- 벌점보다는 모범학생에 대한 격려와 표창을 통하여 규정이 정착되도록 한다.

### ○○초. 휴대전화 사용 규제 생활규정 만들어 학교에 건의

○○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시선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는 지난 3월 휴대전화사용규제생활규정(안)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최근 학교 생활규칙으로 제정해 달라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전교어린이회가 만든 휴대전화 사용 규제 생활규정은 모두 3개 항이다.

제1항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켠다. 제2항은 1항을 3번 위반했을 때에는 담임교사가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한 후, 되돌려 준다는 것.

또 제3항은 제2항을 3번 위반할 때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학부모에게 인계하고 학년 중 휴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꼭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나서 사용한다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는 일과 중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등의 예외조항을 달아 학교와 가정 간 비상 연락통로는 열어 놓았다.

이 생활규정은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찬반 토론 끝에 전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학운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과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학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어린이회 회장 ○○○양은 “일부 학우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학생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어린이회 회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규제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교감은 “학생 자치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놀랍고 한편으론 대견스럽다”며 “학생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 학부모와 교사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성실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울산 연합뉴스, 2011. 5. 3.

## 2. 소지품 검사 규정

### ▣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 의의

-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다.
-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 ·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 적용시 유의점

- 소지품 검사는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교육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교사 · 학생 ·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한다.
-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 ·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등이 실시하되 성별이 같은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실시한다.

## 사례2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 미국 연방대법원 New Jersey v. T.L.O. 469 U.S. 325(1985)

- 실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고 흡연 사실을 물었으나 부인하자 지갑을 수색하였고 마리화나와 관련될 수 있는 종이가 발견되자 더 자세히 수색하여 약간의 마리화나와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됨
- 해당학생이 수색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학생의 사생활보호와 교육환경 보호는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수색(소지품 검사)이 가능하며, 그 한계는 연령·성별, 수색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생권리신장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예시1

### 학칙 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조항

#### 제00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생들은 항상 소지한다.
- ② 학생들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Tip 두발 · 복장 등 용모규정**

- (근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 '두발 · 복장 등 용모규정'은 초등학교에서 활용도가 크지 않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다만, 두발 ·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법정 학칙 기재사항의 하나이므로 이를 지율로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다른 학칙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필요하다.  
(※ 필요한 경우 교복 등 복장규정, 두발규정이나 별도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함.)



### 3.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

####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 의의

●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시민 으로서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 ▣ 유의사항

-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조력과 지도가 중요하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학생자치활동 운영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전교어린이회               |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
| 전교어린이회<br>정 · 부회장 선거 | 공명선거협약서 작성과 입후보자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입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평가하고, 어린이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활동 |
| 스승의 날 행사             | 스승의 날 행사를 '선생님께는 감사를 학생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                     |
| 체육대회                 | 전교어린이회(체육부 중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대회 준비          |
| 축제                   | 전교어린이회가 기획하여 개인의 다양성과 협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하고 '축제는 소통문화'라는 인식 공유            |



## 예시1 어린이회 운영 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초등학교 어린이회 운영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길러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 제 2 장 어린이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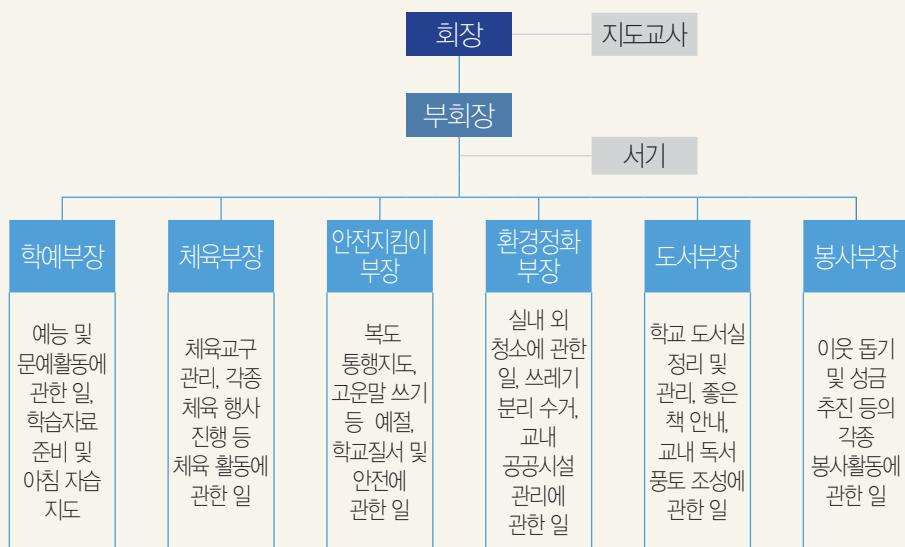
**제4조(명칭)** 본회는 ‘○○초등학교 어린이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교 어린이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어린이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어린이회의 구성은 3학년 이상으로 하며 각 학급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서기, 학예부장, 체육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정화부장, 도서부장, 봉사부장 등을 자율적으로 1인씩 두도록 한다.
2. 전교어린이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서기, 학예부장, 체육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정화부장, 도서부장, 봉사부장 등을 각 1명씩 두며, 회의 참가 대상은 4, 5, 6학년 각 학급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교어린이회 정·부회장, 각부 부장 및 서기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제 검토 및 선정
  - ② 협의 내용 및 시행 계획 작성
  - ③ 전교어린이회 소집 공고
  - ④ 전교어린이회 시행 결과의 분석

**제 3 장 어린이회 운영 및 지도****제9조(회의)** 어린이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학급 어린이회는 학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학급의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사항이 보고된다.
2. 전교어린이회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학교 어린이 생활 전반에 관한 주요안건을 토의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모여 의제를 검토하고 전교어린이회 시행을 준비한다.

**제10조(지도)** 어린이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 담임 교사와 전교어린이회 담당 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할 수 있다.

1. 학급 담임 교사는 학급 어린이회 운영 및 회의 사용 용어 등에 관해 학년 초와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2. 전교어린이회 담당 교사는 전교어린이회 운영 및 회의 사용 용어, 올바른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실천력을 기른다.

**어린이회 임원 선거 참고 정보**

어린이회 선거관련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사이트 (<http://www.teen.go.kr>) → 학교선거도우미 → 학교선거규정 및 서식 → '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를 통해 선거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규정 자문 및 제·개정 지원, 투표함과 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와 사무처리 방법 안내, 공명선거 강의 및 각종 선거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제 3 절 학급회

**제30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1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인(○○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2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부재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3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4조(회의)** 학급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5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2010). 학교생활규정표준안.

## 예시3

## 회의 진행 준비 및 사전 교육

## ■ 회의 준비

-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회의 진행 시 준비물(국민의례, 회의 차례, 유인물, 의사봉 등)을 준비
- 필요시, 회의 진행자에게 실제 회의 진행 상황과 같이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여 진행방법을 숙지시킨다.

## ■ 회의용어 사용

- 동의(動議)제안  
“～을 어떻게 하자(합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동의(同意)와 다르다.
- 재청(再請)  
위 동의를 의제로 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재청이요.”라고 말한다. 재청이 없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 동의(動議)의 선포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곧 “재청이 있었으므로 000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한다.

## ■ 토론

- 토론의 순서는 ‘제안 이유 설명→질문→토론→수정안→재수정안→토론 종결’ 순으로 한다.
- 질문은 잘 모르는 것만 해야지 질문의 형식을 빌려 반대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 토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대로 발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 동의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즉시 토론에 들어간다.
- 수정동의에 대해 재수정안을 낼 수 있으며, 이때 표결 순서는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 순이다.
-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제안자의 최종 결론 발언을 시키는 것이 좋다.

### ■ 표결

- 재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원동의안의 순으로 표결한다. 회의장에 없는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표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표결 시에는 어느 한 쪽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한 번 행한 표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정하지 못한다.
- 의장의 캐스팅보트 행사 유무는 미리 명시해 두거나 표결 전에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발표시 요령

| 구 분       | 발표 내용  |
|-----------|--|
| 처음 의견     | ~은 ~라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
| 보충 할 때 의견 | ~의 의견에 보충하겠습니다. / 저는~라고 생각합니다.<br>~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
| 수정 의견     | ~의 의견도 좋지만 / ~은 ~라고 하였는데 ~을 ~라고 고치는<br>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라고 생각하기<br>때문입니다. |
| 반대 의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br>~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 질문할 때     | ~은 잘 모르겠습니다. /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 ■ 지도교사(학급담임, 학생부장, 학교장)의 역할

- 첫 회의는 산만하고 잘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집행부원 중심으로 미리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회의를 개최해 본다.
- 회의 진행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에는(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등) 올바르게 잡아준다.
- 의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참고(전문지식과 정보 제공)발언을 요할 때, 전체학생이 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회의가 진행될 때, 교사는 의장의 동의를 구한 후 참고발언을 해줄 수 있다.
- 회의 도중에는 가급적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사결정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회의 마무리 단계에 의장의 제안으로 지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예시4

## 전교 어린이(학급)회의 진행 모형

| 순서 | 단계         | 진행구조   | 진행요령   |
|----|------------|--|--|
| 1  | 개회 선언      | “지금부터 제( )회 학생대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 : 사회는 부의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li> <li>② 개회 선언 : 의장,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li> <li>③ 개회 전에 각종 준비물을 확인한다.<br/>(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 등)</li> </ul>   |
| 2  | 국민 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자가 진행</li> </ul>  |
| 3  | 의장 인사      | 인사말(최근 학생들의 관심사, 중요한 학생회 일, 학생회를 믿고 협조한 대의원(학생)들에 대한 감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장은 중요한 보고 사항을 보고한다.</li> <li>② 본 회의 시 핵심 사항을 알려주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li> <li>③ 모든 대의원(학급 학생)이 의안 해결을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사말을 한다.</li> </ul>   |
| 4  | 평가 · 보고    | 지난 회 회의록 낭독, 의안 실천 결과보고, 각 부서별 보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장이 진행</li> <li>② 서기는 지난 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보고된 회의록은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li> <li>③ 지난 회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장 및 담당자는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 차원의 보고를 한다.</li> <li>④ 기타 운영위원의 반성 및 평가, 보고까지를 포함하여 의장이 종평한다.</li> </ul> <p>* 필요시 의장이 대의원(학급 학생)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간략히 구두 보고하거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p>  |
| 5  | 의안 보고 및 채택 | 의안 보고 및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한다.</li> <li>② 학교에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의안을 제시하기도 한다.</li> <li>③ 의원들로부터 의안 동의(同議)가 있으면 재청을 받아 채택한다.</li> <li>④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제안자는 의안의 중요성과 의안과 관련된 실태, 바라는 바 등을 설명한다. 제안자는 찬성,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p>* 학교에서 제시한 의안일 경우 해당 학생회 부서장 혹은 의장이 제안 설명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의안은 절실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li> <li>⑥ 의장은 적절하지 못하게 동의(動議)된 안건은 기타 토의나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li> </ul> |

| 순서 | 단계        | 진행구조                                      | 진행요령   |
|----|-----------|---|--|
| 6  | 의안<br>심의  | 채택된 의안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등)</li> <li>②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li> <li>③ 질의 및 응답을 한다.</li> <li>④ 의안을 충분히 토론한다.</li> <li>⑤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토론을 종결한다.</li> <li>⑥ 표결 후 결과를 발표한다.(의장 의사봉 3타)           <br/>※의장은 찬반 간에 평등한 발언 기회와 충분한 토의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료 부족으로 사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잠시 정회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지도교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표결은 사안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의사표를 물어 거수, 기립, 비밀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         </li> </ul> |
| 7  | 기타<br>토의  | 기타 사항을 토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 회의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시급히 토의할 사항을 처리한다.</li> <li>②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br/>※ 대의원 1/3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된다.         </li> </ul>   |
| 8  | 건의        | 건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급한 문제를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을 다룬다.</li> <li>② 필요시, 담당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
| 9  | 회의록<br>낭독 | 보고 및 결의된<br>사항 낭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기는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책임지며, 본 회의에서 보고되었거나 결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li> </ul>   |
| 10 | 도움말       | 지도교사의 도움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필요 시 지도교사는 회의 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 등에 대해 도움말을 할 수 있다.</li> </ul>  |
| 11 | 교가<br>제창  | 제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가 제창</li> </ul>  |
| 12 | 폐회<br>선언  | 이상으로 제( )회<br>학생대의원회<br>(학급회)를<br>마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의사봉 3타)</li> <li>② 대의원(학급 학생) 모두 박수로 마친다.</li> </ul>  |

## 예시5

## 학급회 회의록

| 출석 인원        | 서기   | 부의장 | 의장    | 회의 장소         |
|--------------|--|-----|-------|---------------|
| 명            |  |     |       |               |
| 회의 일시        | ○○년 ○월 ○일  |     | 회의 시간 | 14:00 ~ 15:00 |
| 토의안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의안</li> <li>▶ 2호 의안</li> </ul>                               |     |       |               |
| 제안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의안(○○○ 제안자 제안 설명)</li> <li>▶ 2호 의안(○○○ 제안자 제안 설명)</li> </ul> |     |       |               |
| 토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의안</li> <li>▶ 2호 의안</li> </ul>                               |     |       |               |
| 질의내용         |  |     |       |               |
| 결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의안</li> <li>▶ 2호 의안</li> </ul>                               |     |       |               |
| 건의 ·<br>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li> <li>②</li> <li>③</li> <li>④</li> <li>⑤</li> </ul>          |     |       |               |

### Tip 학급규칙의 운영방법과 절차

| 순서 | 학급 규칙 제정 절차  | 시기    | 비고   |
|----|--|-------|------|
| 1  | 학급규칙 제정의 필요성 연수<br>– 학급규칙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점                            | 2월 중  | 담임교사 |
| 2  | 학급 상황 파악   | 3. 4  | 3일간  |
| 3  | 학급규칙(안) 작성<br>– 학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                      | 3. 8  |      |
| 4  | 학급규칙 제정<br>– 학급 자치회의에서 결정  | 3. 10 |      |
| 5  | 학생자치지원부에 제출 및 검토<br>–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 3. 13 |      |
| 6  | 학급규칙 제정 알림<br>–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 3. 19 |      |
| 7  | 학급규칙 중간 수정 점검<br>– 학급규칙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br>– 학급회의에서 논의하여 수정 및 확정 | 3. 25 |      |
| 8  | 수정된 학급규칙 알림<br>–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 3. 31 |      |

### Tip 학급규칙 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

#### ▶ 학생

-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로 제정된 학급규칙은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 학급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나간다.
- 학급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 ▶ 교사

- 제정된 학급규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실에도 게시한다.
- 학급규칙을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교사가 먼저 학급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인다.
- 학부모와 협조하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급규칙의 준수에 대한 평가(체크리스트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개인이 원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부모

- 학생과 담임교사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학부모도 학급규칙을 지켜 모범을 보인다.

**Tip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학급헌법 만들기**

- 법사랑 사이버랜드(<http://cyberland.lawnorder.go.kr>)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로서 학급헌법(학교규칙의 한 유형) 만들기를 지원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메뉴 : [사이버랜드] → [체험 법세상] → [우리 헌법 만들기]
- 학급헌법 만들기 과정별 내용을 체험형으로 쉽게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학급헌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도 제공된다.  
※ 지도안 다운로드 : 우측 상단 [수업지도안] 클릭  
※ 지도안 책자 신청 : 이메일 신청(lawnorder@korea.kr)
- 학급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약속들을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



### 1) 꿈땀이반의 학급헌법(꿈을 위해 땀을 흘리는 어린이 반의 약속!)

노력하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우리가 행복한 학급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꿈땀이들은 함께 노력하여 아래 학급헌법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제1조 열심히 공부해요!(수업시간)

- 제1항.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라도 모둠활동을 열심히 해요.
- 제2항.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며 수업시간에 떠들고 장난치지 않아요.
- 제3항. 선생님 설명 중에는 끼어들지 않고 잠시 기다리기로 해요.

#### 제2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요!(환경보호)

- 제1항. 주위에 보이는 쓰레기 내가 먼저 주워요.
- 제2항.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요.
- 제3항. 급식시간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해요.

#### 제3조 친구는 소중해요!(우정, 사랑)

- 제1항. 겸손하고 바른 모습으로 친구에게 모범이 되어요.
- 제2항. 특수반 상엽이가 소리를 내도 참아주고, 하루에 2번이상 말 걸어줘요.
- 제3항. 한 형제인 우리는 친구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줘요.

#### 제4조 교실은 즐거워요!(웃음, 배려)

- 제1항. 친구의 장점을 잘 살펴서 칭찬 사워할 때 더 많이 말해줘요.
- 제2항. 각 모둠의 칭찬이와 웃음이는 하루에 한 번씩 웃겨줘요.
- 제3항. 짜증내고 신경질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말해요.

#### 제5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밝은 세상)

- 제1항. 내 용돈을 아껴서 불우이웃을 도와줘요.
- 제2항.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항상 교통질서를 잘 지켜요.
- 제3항. 학교에 오면 휴대전화를 꼭 꺼놓아요.

#### 제6조 할 일은 하고 놀아요!(성실, 노력)

- 제1항. 체력을 기르고 꾸준히 운동해요.
- 제2항. 학급일지는 예쁜 글씨로 바르게 잘 써요.
- 제3항. 청소와 아침자습시간은 성실하게 노력해요.

## 2) 꿈땀이반 인터뷰

### 학급헌법은 우리반의 즐거운 놀이

“제가 담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은 정말 착하고 예쁜 친구들이예요. 친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함께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업이 끝난 뒤 남아서 친구가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친구도 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6반에 대한 ○○○ 담임선생님의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 “6학년 학급은 사춘기가 찾아온 친구들이 많아서 지도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반은 학생들이 워낙 착한데다 학급헌법까지 잘 지켜주니 정말 제가 감사하다니까요.” 6학년 6반 꿈땀이반의 학급헌법은 도덕시간에 법과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던 도중에 만들게 되었다. 6개의 모둠을 만들어 각자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하고 전체의견을 반영해 학급헌법 조항들을 채워갔다. “한 친구는 법질서 노래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너무 연습을 많이 한 나머지 막상 무대에서는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죠. 학생들이 다들 즐거워하니까 담임인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출처 : 법무부(2011). 행복해요 가정헌법. 함께해요 학급헌법.

\* 2011년 법무부가 진행한 <가정헌법/학급헌법 만들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 1) 작은 별들의 큰 꿈 사치연산 행복반 학급헌법

무지개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은 별들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몸과 정신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 제1장 행복 + 더하기

**제1조** 칭찬게시판을 만들어 매일 한명씩 그 친구의 자랑거리 및 칭찬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선물로 준다(1인 1칭찬하기).

**제2조** 1교시 시작 전 10초동안 크게 웃기, 종례시 친구를 웃겨줌으로써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제3조** 하루 2번 발표, 모둠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

#### 제2장 나쁜 행동 – 빼기

**제4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실내화를 구겨 신지 않는다.

**제5조** 우리의 대화를 막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 한다.

**제6조** 다음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① 복도에서의 무한질주, 폭력 및 욕설사용, 학습방해, 왕따 시키기
- ② ①항의 구체적인 벌칙은 학급법률을 따른다.

#### 제3장 기쁨 × 곱하기

**제7조** 우리와 결연 맺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프리스카를 위해 매달 천원씩 성금모금을 하며 부족 금액은 선생님이 낸다.

**제8조** 기쁜 일이 있거나 상을 받은 친구에게는 학급 홈페이지에서 축하의 쪽지를 날린다.

#### 제4장 슬픔 ÷ 나누기

**제9조** 몸이 아픈 친구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제10조** 슬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플 때 친구를 위로해 준다.

- ① 위로하기 게시판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민상담. 슬픈 일을 위로 받아 슬픔을 함께 하도록 한다.
- ② 본인이 비밀을 원할 때는 익명으로 한다.

- 부칙 : 헌법 개정으로 학급회의 시 2/3의 찬성, 1/2 찬성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휴대전화는 등교 후 제출하고 하교할 때 가지고 간다.

**제2조** 숙제를 안할 시에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짹궁자리 청소하기

② 2회 이상 반성문 반쪽 쓰고 친구 10명에게 사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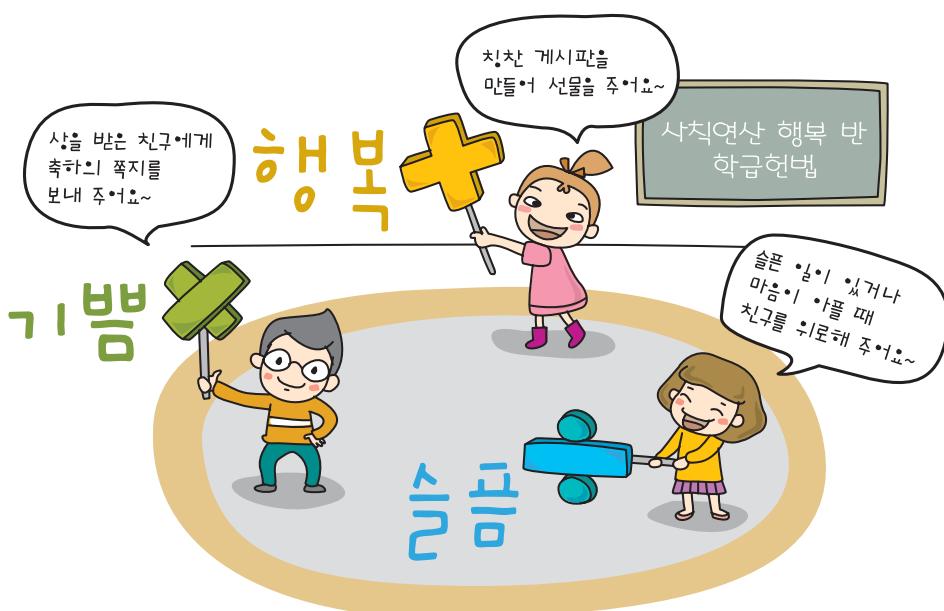
**제3조** 헌법 6조를 어길 시 1회 경고, 2회부터 복도에서 쉬는 시간마다 ‘～을 하지 맙시다.’라는 뜻말을 들고 캠페인을 한다.

**제4조** 각자 하기 싫은 행동(벌칙)을 쓴 종이를 상자에 넣고 잘못을 할 시, 제비뽑기를 하여 그 벌칙을 수행한다.

**제5조**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칙은 형법 2조에서 4조의 벌칙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출처 : 법무부(2011) 행복해요 가정헌법, 함께해요 학급헌법.

\* 2011년 법무부가 진행한 <가정헌법/학급헌법 만들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학기 초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교어린이회장 선거가 ○○초등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각 학급의 임원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전교어린이회가 폐지되고, ‘학년 다모임’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어린이회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학년 다모임’ 이란 일주일에 한 번 자치활동 시간을 이용해 4~6학년 모든 아이들이 학년별로 모여 회의 주제에 대해 모둠토의 형식으로 회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전교어린이회 참여율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6학년 전체학생 대상 설문조사(전교어린이회 임원 불필요 의견 68.4%, 학년별 다모임 형태 의견 59.3%)로 결정됐다.

미리 결정된 회의 주제를 며칠 생각해본 후 학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모둠으로 갈라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둠에서 모여진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꽤 격렬하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는 각 학급별 회의에서 여러 개가 결정되고, 학년별로 설치된 건의함에서 나온 안건들을 복도에 게시한 후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여 결정되기도 한다.

집단 따돌림 문제, 건의사항,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의견, 쉬는 시간 활용 방법 등 학생들에게 직접 와 닿는 주제를 스스로 결정해 회의 참여도가 높다. 기존의 어린이회 방식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학년 다모임 회의 형식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2학기도 어느덧 중반이 지난 지금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학교가 외치는 그 ‘민주시민’이 바로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2

## “학칙은 우리가 정해요”



초등학생이 토론을 거쳐 학칙을 정하는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교장 ○○○) 이야기다. 이 학교는 전교생 모두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게 하고 싶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월 과제 토론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다.

다달이 토론 과제를 정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교어린이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제도다. 담당교사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 편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학교 규칙을 정하면 어찌나 걱정했다”면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토론을 통해 최선의 답을 이끌어 내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각 학급에서는 학급 어린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 학급의 의견을 정했다. 학급대표는 전교어린이회에서 학급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을 통해 그 달의 토론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결정된 의견은 교직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돼 학교 운영에 반영됐다. 학생이 토론을 거쳐 정한 규칙 중에는 실내화 주머니 없앤 것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다니며 등·하교를 했다. 현관 입구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준비물이 많거나 비가 올 때면 실내화 주머니가 거추장스러웠다. 이 문제를 토론주제로 삼아 한 달 간 열띤 토론 끝에 ‘실내화 주머니를 없애자’고 결정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내화 주머니 없애기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신발의 흙을 터는 곳을 준비하는 등 한 달간의 단계별 준비 끝에 교실 근처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 방법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10월 ‘실내화로 슬리퍼를 신어도 되는가?’, 11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12월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되는가?’ 등의 문제도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 6학년 ○○○ 학생은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져 학교 준비물을 많이 들고 갈 때 훌가분해져 좋다.”고 말했다. ○○교장은 “학생이 결정한 것을 학교에서 존중해 학칙으로 정하는 일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의견을 존중해 학교를 경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팔공신문. 2012. 1. 10.

## 4.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9. 학교규칙 개정절차

▣ 의의

- 학교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규칙이 타당성있게 제 · 개정 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돋는다.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제 ·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적용시 유의점

- 가급적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 절차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9호)’ 개정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 제 · 개정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특히 운영 주체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한다.
- 긴박하게 규칙개정이 필요할 시에 제 · 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1

##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학생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 · 벌점제)

### ◆ 의의

-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생활평점의 항목과 운영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 ◆ 운영 원칙

-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상 · 벌점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학교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한다. 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 과벌점 학생에게 징계를 할 경우에는 생활평점제 규칙 및 선도규칙에 징계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단, 생활평점제의 운영 목적은 기초생활습관과 인성지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 전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생활평점제는 학교에 따라 자율적 ·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평점제는 상점제와 벌점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긍정적인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운영 절차

| 단계         | 주요 실천 내용  |
|------------|---|
|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평점제 규칙 제·개정<br/>(상·벌점 항목 및 배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li> <li>▶ 교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원 시스템 등록 및 권한 부여</li> <li>▶ 상·벌점 시행에 필요한 소요 품목(예: 카드 등) 준비</li> <li>▶ 생활평점제 운영 동의서 발송 및 수합</li> </ul> |
| 연수 및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상·벌점 내용 교육<br/>(학기 초, 개정 직후)</li> <li>▶ 학교(학급)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 규칙집 제작 홍보</li> <li>▶ 생활평점제 시행 홍보(시범운영) 기간 운영</li> </ul>   |
|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교원 상·벌점수 입력 또는 선정된 담당자에 의한 입력</li> <li>▶ 학생별 학급별 상·벌점 누계 통계처리</li> <li>▶ 이의 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li> </ul>  |
| 학생 선도 및 표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선행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li> <li>▶ 과벌점 학생은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부여</li> </ul>  |

## ◆ 적용의 실제

### (1) 준비 단계

- 상점 위주의 생활평점제규칙을 제·개정한다.
- 상점과 벌점의 배당 점수를 정할 때 편차를 심하게 두지 않는다.
-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시 벌점을 차감하여 준다.

## (2) 연수 및 홍보 단계

- 상 · 벌점 규칙에 대해 학교(학급)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자세히 안내한다.
- 상 · 벌점 부여 절차 및 규칙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생활평점제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3) 시행 단계

- 가급적 상점 부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모든 교사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점수를 부여한다.
- 이중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문제 행동 발생 시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때에는 가급적 벌점을 주지 않는다.
-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 (4) 선도 및 표창 단계

- 무벌점 및 상점 상위 학생은 각종 모범학생 표창에 추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학생자치법정, 학교 내 대안교실(Wee 클래스, 성찰교실 등)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생활평점제는 일년 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적용상의 유의점

- 교사는 학생의 상·벌점 해당 행위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상·벌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 다양한 상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사례1

### 레인보우 칭찬 모범어린이제(○○초등학교)

#### 1) 운영 목적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건전하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준다.
-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생활지도를 통해 준법의식을 배양한다.

#### 2) 운영 방법

- 레인보우 칭찬제
  - ▶ 아침활동, 학급회의, 일상생활 및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의 생활태도를 관찰하고 '레인보우 사랑 실천 행동'이 발견될 때마다 칭찬씨앗을 수여
  - ▶ 칭찬통장에 칭찬씨앗 30개를 모으면 단계에 맞는 뱃지 수여 (교장선생님이 매주 조회시간에 직접 수여하며,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7단계 뱃지를 모두 다 받은 학생은 모범어린이상을 받음)
- 지도점제
  - ▶ 학칙위반 및 잘못된 행동에 대해 1~5점의 지도점 부여

### 3) 운영 절차

| 단계         | 주요 실천 내용  |
|------------|---|
|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레인보우 칭찬 모범어린이제 및 지도점제 규정 제·개정</li><li>▶ 칭찬·지도점 항목 및 배점 결정 시 학생 의견 반영</li><li>▶ 칭찬·지도점 시행에 필요한 칭찬·지도점 통장, 레인보우 칭찬 배지 준비</li></ul>  |
| 연수 및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기초 또는 규정 개정 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li><li>▶ 학교(학급)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규정안내 및 홍보</li></ul>   |
|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레인보우 칭찬제 및 지도점제 시행</li><li>▶ 별점 5점과 칭찬씨앗 10장을 교환할 수 있게 함.</li></ul>   |
| 학생 선도 및 표창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범어린이에 대한 레인보우 칭찬 배지 수여 및 모범어린이 표창장 수여</li><li>▶ 지도점에 의한 학생 지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개인 누계 지도점에 따라 7단계의 단계별 지도 실시</li><li>– 학교자체 대안교실(교육청 Wee 클래스 연계 지도, 성찰교실) 운영</li></ul></li></ul> |

### 4) 적용상의 유의점

-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
- 가급적 칭찬씨앗 부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 지도점 부과로 인한 지도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모든 교사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칭찬씨앗과 지도점을 부여한다.
- 문제 행동 발생 시 충분히 훈계하여 학생이 인정하고 행동수정이 될 때는 지도점을 주지 않는다.
- 교사는 지도점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지도점 해당 행위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 레인보우 칭찬제 기준점

| 단계  | 레인보우<br>(rainbow) 사랑     | 실천 덕목  | 실천 내용(예시)   |
|-----|--------------------------|--------|---|
| 7단계 | 레드 사랑<br>(나 사랑)          | 용기, 열정 | 의사결정 참여, 열심히 공부하기, 규칙과 규율 지키기, 특기적성 기르기 등   |
| 6단계 | 오렌지 사랑<br>(친구 사랑)        | 사랑, 배려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존중 및 배려, 친구 칭찬하기 등  |
| 5단계 | 옐로우 사랑<br>(가족사랑)         | 지혜, 긍정 | 부모님 직장 체험하기, 나의 뿌리 찾기 등   |
| 4단계 | 그린 사랑<br>(환경 사랑)         | 조화, 희망 | 환경생태 육성 및 저탄소생활 실천 등  |
| 3단계 | 스카이 블루 사랑<br>(학급, 학교 사랑) | 신뢰, 협동 | 신나는 수업분위기 만들기, 학급봉사 활동 참여하기, 학생자치회 활동 참여하기, 학교 캐치프레이즈 공유하기, 학교 예절 지키기, 학교자랑거리 나누기 등 |
| 2단계 | 블루 사랑<br>(나라 사랑)         | 도전, 비전 | 애국가 4절까지 외우기, 국기 달기 등   |
| 1단계 | 바이올렛 사랑<br>(인류 사랑)       | 존엄, 고귀 | 세계 위인전 읽기, 인터넷 예절 지키기, 환경 지키기 실천 등  |



레인보우 칭찬뱃지(무지개색) ▲



레인보우 칭찬 안내 홍보판 ▶

## 행동사례별 지도점제 기준

| 지도점 | 지도대상 행동  |
|-----|--|
| 5점  | <p>정당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br/>         예1) 수업 방해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br/>         예2) 지속적인 잘못된 행동의 반복(다툼, 규칙 지키지 않기, 욕설 등)</p> <p>폭력 행사 –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이나 가벼운 상처 등을 입히는 경우.<br/>         금품 갈취, 협박 등의 경우,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기타 폭력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협의), 불량서클 가입</p>  |
| 3점  | <p>실내생활 – 교내 전 층 교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에서 사람과 물건 등 밀기, 뛰기, 던지기, 소리 지르기<br/>         예1) 배식자를 타거나 세게 밀기, 청소도구를 이용한 장난으로 기물 파손<br/>         예2) 교내 전체에서 공을 벽에 털기거나 계단 아래로 던지기(실내에서 공은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기)<br/>         예3) 책상, 책장, 사물함 등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기<br/>         예4) 복도창문 넘거나 매달리기, 학용품을 이용한 장난(자, 컴퍼스, 샤프, 압정, 커터칼 등), 그 밖에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행동</p> <p>거짓말 – 거짓말 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등이 밝혀질 경우</p> <p>부모님의 허락이 없는 PC방, 노래방, 게임방 등의 유해업소 출입</p> |
| 2점  | <p>휴대전화 사용 –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보관을 청하지 않고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복도, 계단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인권규정 제29조1항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보관 요청 및 하교 시 가져감을 원칙으로 함)</p> <p>인터넷 사용 – 험담, 악플, 학급홈피나 공개적인 카페나 블로그에 욕설, 비방글 게시할 경우</p> <p>회장(색조화장), 가격이 비싼 게임기나 MP3 등을 학교에 가져오는 경우, 등하교 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경우</p> <p>슬리퍼 착용, 장식성 텔실내화(패션 텔실내화) 착용, 실내화 신고 운동장 나가기, 실외화 신고 실내 출입 시</p>  |
| 1점  | <p>시간 지키기 – 아침활동, 수업시간, 점심시간 등</p> <p>수업시간 중 자리이탈, 선생님 허락 없이 이동할 때</p> <p>우측통행 불이행 및 한 줄서기 불이행</p> <p>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예절실, 체육관, 도서관 등)에서 정숙 및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p>   |

※ 지도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ADHD 증상 등)에는 별도로 지도한다.

### 지도점에 따른 지도 단계

| 단계                   | 지 도 내 용  |
|----------------------|--|
| 1단계                  | 지도점 5점 – 담임선생님의 훈계   |
| 2단계                  | 지도점 10점 – 반성문 + 1시간 정서교육(성찰교실)   |
| 3단계                  | 지도점 20점<br>– 반성문 + 2시간 정서교육(성찰교실) + 2시간 봉사활동   |
| 4단계                  | 지도점 30점<br>– 반성문 + 3시간 정서교육(성찰교실) + 3시간 봉사활동 + 학부모 면담  |
| 5단계                  | 지도점 40점<br>– 6시간 정서교육(성찰교실) + 학생, 학부모 면담 + 생활기록부에 정서교육 및 봉사활동 내용의 기재   |
| 6단계                  | 5단계 지도 실시 이후에도 학생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함.(단 1회 정지, 3회 정지, 5회 정지, 7회 정지 등 순차적으로 시간을 늘려 실시함)  |
| 대체<br>교육프로그램<br>지도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 방법 : 행동 인정(설득) → 상담 → 이해의 순으로 지도</li> <li>▶ 정서교육의 예 – 성찰교실로 이동 후 학년 부장 및 동학년 교사, 생활지도교사가 실시(생활지도 지도교사에게 해당 아동 연락)</li> <li>▶ 봉사활동의 예 – 학급 및 학년 복도, 계단 청결 활동, 급식차 정리 등</li> </ul> |

## ① 학생생활평점제 칭찬점수(Blue Point) 배점표

| 구분         | 항목 내용                                       | BP 배점 |
|------------|---|-------|
| 성실-<br>언행면 | 항상 인사를 잘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교사들과 급우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생 |       |
|            | 항상 복장이 단정하고 두발이 타의 모범이 되어 추천된 학생            |       |
|            |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언행이 바르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추천된 학생         |       |
| 성실-<br>학습면 | 과제 및 수업준비를 항상 잘 해오는 학생                      |       |
|            | 항상 수업태도가 바르고 주의 집중이 모범이 되는 학생               |       |
|            |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학생             |       |
| 성실-<br>환경면 | 학교 내 · 외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학생            |       |
|            | 청소시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맑은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행하는 학생       |       |
| 봉사-<br>학습면 |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학습활동을 수시로 도와주는 학생              |       |
|            | 상담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학생                 |       |
| 봉사-<br>도우미 | 급우들의 다툼에 적극 개입하여 말린 학생                      |       |
|            | 불우 이웃돕기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                 |       |
|            | 따돌림 학생과 친구가 되어 주거나 꾸준히 도와주는 학생              |       |
|            | 장애우를 지속적으로 돕는 학생                            |       |
|            | 교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횟수가 많은 학생                   |       |
|            | 학교, 학급활동 도우미 학생(봉사시간 인정자는 제외)               |       |
| 명예-<br>표창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신고하여 위험을 모면하게 한 학생           |       |
|            | 학교장상 및 표창(학업상 및 장학생 선발자는 제외)을 받은 학생         |       |
|            | 시 · 군 · 도 · 전국 단위의 기관장상 및 표창을 받은 학생         |       |
|            | 매스컴 및 기타 매체를 통해 학교를 빛낸 학생                   |       |
| 질서-<br>선행  |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돈, 지갑,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       |
|            |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                        |       |
|            |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의 위험한 상황을 신고한 학생                |       |
|            | 학교 밖에서 선행을 행한 학생                            |       |
|            | 자치법정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                 |       |

## 2 학생생활평점제 지도점수(Red Point) 배점표

| 코드 및 분류명 | 항목 내용   | RP 배점 |
|----------|---|-------|
| 용의<br>복장 | 두발규정을 재차 위반한 학생                                     |       |
|          | 착용 금지 품목(장신구)을 착용한 학생                               |       |
|          | 실내화 착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기방에 대한 규정을 재차 위반한 학생                                |       |
|          | 교육활동 중 명찰을 미착용한 학생                                  |       |
|          | 교복 변형 등의 복장 관련사항을 위반한 학생                            |       |
| 출결       | 합당한 이유 없이 지각을 한 학생                                  |       |
|          | 무단으로 조퇴, 결과, 외출을 한 학생                               |       |
|          | 무단결석한 학생  |       |
| 흡연<br>음주 | 라이터, 담배 등 소지 금지 품목을 소지한 학생                          |       |
|          | 흡연을 부추기거나 동조한 학생                                    |       |
|          |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                                     |       |
|          | 교내·외에서 음주를 한 학생                                     |       |
| 교내생활     | 맡은 청소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주변 청결을 소홀히 하여 타 학생의 학교생활을 불편하게 한 학생 |       |
|          |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물을 갖추지 않은 학생                         |       |
|          | 계속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                               |       |
|          | 등교할 장소 외 다른 곳으로 등·하교한 학생                            |       |
|          |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빈번하게 소홀히 한 학생                          |       |
|          | 특별실·보건실 사용규칙을 위반한 학생                                |       |
|          | 실내·외에서 지정된 장소 외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상습적으로 급식소 등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은 학생                         |       |
|          |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에 다른 학생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학생  |       |
|          | 주의를 주었으나 실내에서 계속 소란행위를 한 학생                         |       |
|          | 교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학생                                     |       |
|          | 고의로 공공기물을 훼손한 학생                                    |       |
|          | 주의를 주었으나 저속한 언어를 계속 사용한 학생                          |       |
|          | 학생생활규정 제8조 '이성교제'를 위반한 학생                           |       |
| 교외생활     |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을 한 학생                                |       |
|          | 시행성 오락행위를 한 학생                                      |       |
|          | '동아리활동 규정'을 위반 학생                                   |       |
|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사실이 확인 된 학생                |       |
|          | 나쁜 행동을 강요한 학생                                       |       |
|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사이버 통신예절을 지키지 않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정보       | 수업 중 수업과 관계없는 물품을 사용한 학생(휴대전화, MP3 등)               |       |
|          |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학생선도위원회 지도)                   |       |

### ③ 자구노력 종류에 따른 회복점수(Green Point) 배점표

| 코드 및 분류명 | 항목 내용  | GP 배점 |
|----------|--|-------|
| 봉사 활동    | 아침 등교 시 지도교사 도우미 활동 30분                              |       |
|          | 쉬는 시간을 이용한 실내·외 청소 30분                               |       |
|          | 학교 급식 시간에 급식 질서 지도 30분                               |       |
|          | 점심시간 후 여가시간을 이용한 교문지도 30분                            |       |
|          | 등교 시 교통안전지도 활동 30분                                   |       |
|          | 학교 특별 행사 후의 봉사활동 30분                                 |       |
|          | 교실, 골마루의 껌 제거 및 지정된 청소활동 30분                         |       |
|          | 다음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br>(학생자치법정 실시 학교) |       |
|          | 일정한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한 친구 도와주기(급식 등)                       |       |
|          | 아침 일찍 등교하여 플래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에 참여하기                      |       |
|          | 예절·질서·배려·존중 등을 주제로 한 한자어 쓰기(300자)                    |       |
|          | 주어진 분량의 수행과제(명신보감 등)를 쓰고 이해한 내용 확인 받기                |       |
|          | 추천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                                      |       |
|          | 추천 시 외우고 선생님과 상담하기                                   |       |

### ④ 지도점수(Red Point) 단계별 지도 방안

| 단계   | RP 포인트    | 지도 종류 | 지도방법   | 담당                         | 관련서류   |
|------|-----------|-------|--|----------------------------|--|
| 1 단계 | ( )포인트 이상 |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상담</li> <li>• 스스로 반성하기(60분)</li> </ul>   | 담임 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성문</li> </ul>  |
| 2 단계 | ( )포인트 이상 | 교정 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책읽기) 실행</li> <li>•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의 지도</li> <li>• 상담교사 상담 지도</li> <li>• 담임교사의 학부모 통보 및 면담</li> </ul> | 담임 교사<br>생활지도부 교사<br>상담 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반성문</li> <li>• 학부모 문자 서비스(SMS)</li> <li>• 별점 통보</li> <li>• 학부모 내교 통지서</li> </ul> |

( )포인트 이상 단계부터는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지도

출처 : 경남교육청(2013).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 pp.54-56

## 6. 교육벌

▣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 … (이하 생략)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에 따라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된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된다.

### ▣ 교육벌의 개념

- 벌이란 일정한 법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고통에는 정신적 ·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포함된다.
-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벌은 다음 설명과 같이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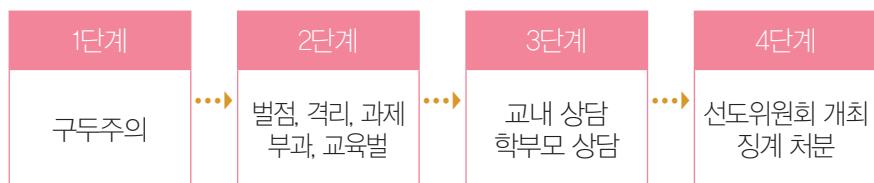
- 학생 생활지도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근거한 방법으로 벌이 아닌 지원행위로 상담, 연수, 칭찬 및 상점제, 분노조정 등의 교육훈련이 있다. 둘째는 행동주의 교육이론에 근거한 방법으로 벌의 성격이 있는 훈육·훈계 방법이다. 셋째는 교육관 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벌이다.



※ 고통의 종류가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는 교육벌을 정의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평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학칙으로 정하되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훈육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교육상황별 교육별 분류

### (1) 정규교육과정 중 지도방법

① 문제 상황 분리형 : 수업 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지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정효과 달성

- **몸으로 나무 만들기**

–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무모양 자세를 달리 정해 상황발생 시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적 반성과 각성효과를 유도

- **생각하는 책상**

–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 분리되는 공간(교실 뒤편에 마련된 생각하는 책상 3~4개)에서 일정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

- **성찰교실**

– 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시간 감정 통제를 하도록 유도 (상담교사 배치가능)

② 자유 시간 이용형 :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 및 교우들에 대한 사고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정효과 달성

- **사과편지**

– 학생 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얼굴을 그리고 하단에 친구의 장점과 함께 사과편지를 쓰도록 유도

- **사랑의 화초 가꾸기**

– 학기 초에 교실 한편에 실내정원을 설치한 후,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화초 관리(관찰기록장 작성 · 물주기 등)를 맡김으로써 책임감 고양 및 관리기간 중 감정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 반성캠페인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등)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 전개
- 캠페인 활동시간으로 점심시간 등을 할애해야 되므로 감정조절 훈련 및 타 학생에게도 교육적 효과 발생

### ● 타임아웃제

-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

## (2) 방과 후 지도방법

- ① 자기성찰 및 상담형 : 학생상담 및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교정효과 달성

### ● 적응력 향상 방과 후 교실

- 부적응 학생을 적정 수(7~10명) 선정한 후 학부모 · 학생과 충분한 상담실시 및 동의를 얻어 적응력 향상 방과 후 교실을 운영
- 학급단위로 실시하기보다 학교단위로 실시하며, 부적응 학생 수에 따라 여러 반을 운영하되 공동 활동도 기회 가능

### ● 활동교실

- 학습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공간을 확보한 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

### ● 학급친구들의 편지쓰기

-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 해당학생의 장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뿐만 아니라 동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② 학습형 :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 및 학습효과 동시 달성

### ●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법

-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 이때 중요한 것은 즉흥적 과제가 아닌 학생의 특성파악을 통해 학생에게 적합하고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적정수준 과제를 제시

### ●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서 권장하는 독서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행동과 유사한 독후감을 미리 선정한 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펜글씨 교본을 제작
- 문제행동 발생 시, 펜글씨 교본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성찰의 시간 부여

### ●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 학생이 작성한 것은 학생별로 누적철을 마련하여 추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 적용방법별 교육별 분류

① 교사제시형 :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대체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교정효과 달성

- 특기 발표

- 학생의 특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감정 억제 유도

- 다양한 대체활동을 통한 문제행동 중지

- 5가지 정도의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등)을 준비한 후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후 실시

② 학생선택형 :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에 대해 대체활동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 다양한 항목의 봉사활동 등을 체계화하여 마련한 뒤, 문제 상황 시 해당 학생에게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성찰 후 스스로 외부봉사활동을 결정하게 함. 교사와 절차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

-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및 실행

- 학생으로 하여금 교실 내에서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여 정하게 하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급회의에서 실시



③ 학급자치형 : 학습구성원이 문제행동에 따른 대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상황발생 시 대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학생들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 ● 학생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

-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급자치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학생자치규율 (학생들이 싫어하는 활동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에 따라 세 번의 경고 후 적용

#### ●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 학급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행동과 바른 행동을 규정(각각의 행동에 점수 부여)하여 모두 공유한 후, 상황판(학생마다 칸을 만든 후 자석을 통해 문제/바른 행동에 따라 자석을 이동)을 제작
-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바른 행동을 발견 시 학생 스스로 혹은 교사가 상황판에 표시하게 하여 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칭찬통장에 도장 부여
- 칭찬통장에 도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월말에 읽고 싶은 책을 상으로 수여한 후 해당도서는 학급도서로 기증

④ 교사 · 학부모 · 학생 협동형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두 문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교정효과 달성

#### ● 나눔일지(교사, 학생, 학부모)를 통한 마음오름길

- 학기 초에 3개 영역으로 구성된 나눔일지(교사, 학생, 학부모 영역)를 마련한 후,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 학생 · 학부 모가 문제 상황에 대해 정보 공유
-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정활동 결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행동변화 시 보상기제 마련

## 7. 학급자치법정

### ◆ 학급자치법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 학급자치법정은 학급 구성원이 법정을 구성하여 학급에서 일어난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학급자치법정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줌으로써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다.
- 법적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급 내 갈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게 하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은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등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직접 맡아서 사법절차를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 Tip 학교단위 '학생자치법정' 운영 방법 안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한 학급단위의 '학급자치법정'이 실효성이 있으므로 '학급자치법정' 운영 방법을 안내하였다.  
학교단위 '학생자치법정' 운영 방법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중등용) 제3장, 8. 학생자치법정'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매뉴얼 파일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탑재).

### Tip 법무부의 학생자치법정 자료

법무부에서는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045개교를 지원하였다.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 (<http://www.lawedu.go.kr>)에서 자치법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자치법정 매뉴얼 및 동영상, 단행본 「모의재판 청소년법정」 등)

### ◆ 학급자치법정 제도의 효과

- 학급에서 발생된 사건을 아이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재판에서 배심원이나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법을 적용시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교사의 임의적인 처벌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학급규칙에 대한 참여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감으로써 친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다.

### ◆ 학급자치법정 운영 절차

- ① 학급규칙을 어겼을 때의 어린이 학급자치법정



## ② 다툼이 생겼을 때의 어린이 학급자치법정



### ◆ 역할에 대한 이해

-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학급 전체가 공유하고, 가급적이면 한 학생이 특정 역할을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각 역할이 하는 일을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학급자치법정을 하기 전에 각각의 역할에 맞는 교육 자료를 나누어 준다.

### ▶ 원고와 피고

- 사건이 접수되면 변호사, 검사와 증인을 확보하고 각각 변론을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검사

- 검사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 검사는 상대편의 학급규칙 위반 사실이나 잘못을 확인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구형을 한다.
- 검사는 피고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감정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 ▶ 변호사

- 변호사도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변호하며, 피고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변호할 때는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에 학급에서 열심히 생활한 점 등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 배심원단에 의해 처벌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 ▶ 판사

- 판사는 교사가 하거나 학생이 한다. 훈련이 된 경우에는 학생이 맡도록 하되,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교사가 맡아 시범을 보일 수도 있다.
- 판사는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한다.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배심원 합의를 거친 결정을 참고하여 판결한다.
- 교사가 할 때에는 판사의 역할을 최소화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 법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한다.

### ▶ 배심원

- 배심원은 변호사와 검사측 주장을 듣고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 배심원은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배심원 기록지에 적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 서기

- 서기는 법정에서의 일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록한다. 재판 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 법정경위

- 법정경위는 법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재판부의 입정과 퇴정을 알린다. 법정경위를 따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기가 겸임할 수도 있다.

### Tip 역할 부여 시 유의사항

실제 학급에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할 때에는 참관인을 따로 두지 않고 판사와 서기, 검사 및 증인,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 이외의 학생들은 모두 배심원의 역할을 맡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였던 학생이 검사나 변호사, 판사 등을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 ◆ 학급자치법정 좌석배치

- 교실환경의 특성상 배심원을 후면 배치하는 모형으로 학급자치법정의 좌석을 배치한다.



### ◆ 유의사항

- 학급자치법정이 처벌과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재판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
- 학기 초, 학급규칙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스로 학급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급자치법정이 우리 학급의 독특하고 즐거운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법정의 의미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2011). 어린이 학급자치법정 매뉴얼 개발.

## 사례1

## 학급 법무부 활동(○○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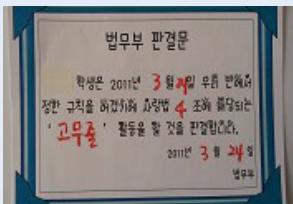
○○○학생은 2011년 11월 2일 우리 반에서 정한 규칙을 어겼기에 사랑법 2조에 해당되는 ‘노력봉사’ 활동을 할 것을 판결합니다.

2011년 11월 2일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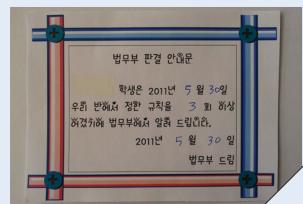
위에 제시된 내용은 학급 법무부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법무부는 학급 내 8개의 부서(환경부, 교육부 등) 중 하나로서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분쟁이 있을 시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의 판결문 발표



아동 판결문



학부모 안내용 판결문

### 1) 법무부의 활동

새 학년이 되고 첫 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모둠을 조직하고 모둠별로 활동 부서를 정한다. 법무부로 선정된 모둠에서는 1차 법무부 회의를 주최한다. 1차 법무부 회의를 통해 학급 아동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랑법’을 제정한다. ‘사랑법’은 우리 반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과 이를 어겼을 시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학급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사랑법이 정해지면 법무부는 ‘사랑법’을 어긴 학생들에게 판결문을 주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겸한다. 법무부에 의해 한 달 동안 3번 이상 지적되거나 같은 사항으로 2번 이상 지적될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판결을 안내한다.

## 2) ‘사랑법’ 조항

| 규칙 |                        | 위반 시(교육벌)                      |
|----|------------------------|--------------------------------|
| 1조 | 친구와 싸우지 않는다.           | 나의 다짐쓰기와 부모님께 편지쓰기             |
| 2조 | 청소시간에 청소를 잘한다.         | 노력봉사<br>(복도 및 계단 청소 등 각종 청소활동) |
| 3조 | 숙제를 잘 한다.              | 고무줄(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예쁘게 묶고, 수업하기)   |
| 4조 |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들지 않는다.     | 둘이 손바닥을 맞붙이고 있기                |
| 5조 |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는다.        |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연하기                |
| 6조 | 수업시간에 이유 없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 칠판에 손바닥을 붙이고 있기                |

학생들에 의해 스스로 정해진 규칙과 위반 시 진행되는 교육벌을 보면 자칫 장난스러운 활동도 있다. 그래도 자신들이 정한 규칙인 만큼 성실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정해진 사랑법은 새로운 문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법무부의 회의를 걸쳐 학생 전체에 논의되어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고 수정되기도 한다. 정해진 사랑법과 법무부의 활동은 학부모통신을 통해 가정으로 안내되어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 3) 법무부의 활동과 사랑법의 시행으로 인한 결과

아동들 스스로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랑법이기에 더욱 더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 초에는 법무부가 매일 5~7건씩 판결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 학년말에는 법무부의 활동이 한가해지기도 하였다. 학급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벌은 부모님들에게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교사에 대한 많은 신뢰감을 주었다.

## 보도자료1

## ○○초, 학생자치법정 열어

##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학생자치법정



역할을 맡아 진행되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교장 ○○○)는 20일 학교 강당에서 4~6학년과 전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초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재판처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되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에는 학생들 스스로 환경정화활동 등 GP를 회복하여 RP 과벌점자가 없어 학생자치법정위원회 학생들이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이날 법정에는 RP과다자의 규칙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과 처벌에 대한 구형으로 3명의 학생이 자치법정에 섰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이들 학생의 행위는 교칙위반이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학생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한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자치법정에 참가한 한 학생은 “오늘 재판의 절차와 조사하고 변론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교장은 “우리 학교는 3~6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학교의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는 법무부 연계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로서 현재 상벌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벌점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처벌보다는 자신을 돌아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교사가 1:1로 학생을 지도해 체벌도 함께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출처 : 뉴스웨이, 2011. 7. 21.

## 8. 어린이 법제관

### ▣ 어린이 법제관 소개

-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08년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법제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 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어린이 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지역별 순회토론파당, 법 캠프, 법 관련 기관 탐방 등 다양한 법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 어린이 법제관 활동

#### ● 온라인 활동

어린이 법제관은 매월 어린이와 관련된 주제로 어린이 법제관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제토론파당', 어린이 법제관이 주제를 올리고 그에 대해 다른 어린이 법제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토론파당', 어린이 법제관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가족참여파당'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 ● 오프라인 활동

어린이 법제관들은 어린이 법제관 위촉식, 법에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는 '지역별 순회 토론파당', 1박2일 캠프를 통해 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 친근해질 수 있는 '법캠프', 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법 관련기관 탐방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행사명               | 일정  |
|-------------------|---|
| 지역별 순회 토론파당 개최    | 어린이 법제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법을 주제로 토론판하는 활동                  |
| 좋은 책 보내기 및 독후감 모집 |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보내주고 이에 대한 우수독후감 모집                 |
| 법 캠프 개최           | 1박2일 캠프를 통해 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친근해지는 활동 시행                           |
| 법 관련기관 탐방행사 개최    | 법제처 외 대법원·국회 등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방문해 법에 대해 직접 체험                        |
| 어린이 법제관 한마당 행사 실시 | 어린이 법제관 1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어린이 법제관활동을 되돌아보고 우수 어린이 법제관에 대한 시상식 행사 개최 |



## 법 제안 활동사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미숙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초등학교 6학년

####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녹슨 채 방치돼 있음.

교회 옆 빗물 배수 펌프장 공사현장에는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들이 인근 놀이터 주위에 별다른 안전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개선 의견]

어린이놀이터를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어린이들이 위험에서부터 멀어져 어린이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의견에 관한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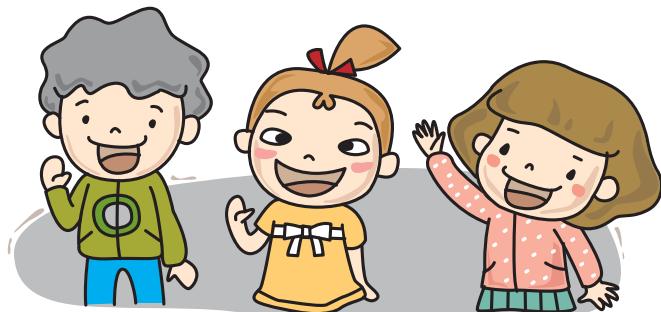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린이들의 피해를 줄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 놀이시설 주기적인 안전관리 점검)

- ①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등급 마크를 생각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가 잘 되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 (웃음마크)를 부여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놀기에 위험한 놀이시설일 경우 (위험마크)를 부여하며 3달간 어린이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3달 동안 놀이시설을 재점검하며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웃음마크)를 받은 모범놀이시설들을 비교하여 가장 관리가 잘 된 놀이시설 3곳을 뽑아 놀이시설 관리자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놀이시설은 모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명예를 갖게 된다.
- ③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놀이시설 소유자와 놀이시설 관리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본 제언은 2011년도 법제처 '어린이 법만들기 대회' 금상 수상작입니다.



##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 ◆ 학생생활협약의 개념

학생생활협약은 학칙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개정되지만, 학생생활협약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율협약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동체 생활협약, 3주체 생활현장, 학급현장, 8조 법금, ○○인의 10가지 약속, 3무3행(三無三行)운동, 바른품성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학생생활협약의 내용



#### ● 학칙에 정해진 사항 중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 학생생활협약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칙, 특히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중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학생생활협약으로 선정될 수 있다.

#### ●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

- 학생생활협약에는 “인사잘하기”,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학칙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율적 약속 성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 의의

- 학생들이 생활협약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 생활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선을 충분히 인식하면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된다.
-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생활협약을 지킬 때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 ◆ 유의사항

- 의견수렴 및 제·개정 전반에 걸쳐 학생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되,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
- 학생 생활협약의 내용이 학교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학생 스스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을 교사/부모/멘토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과정이 충분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일수록 협약의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생생활협약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나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협약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 협약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자필로 자신의 약속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 1) 학생의 약속

- ① 수업시간에 즐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 있게 한다.
- ④ 학생 상호간에 욕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 분위기를 만든다.
- ⑨ 의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 ⑩ 거짓말, 핑계, 내숭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 2) 교사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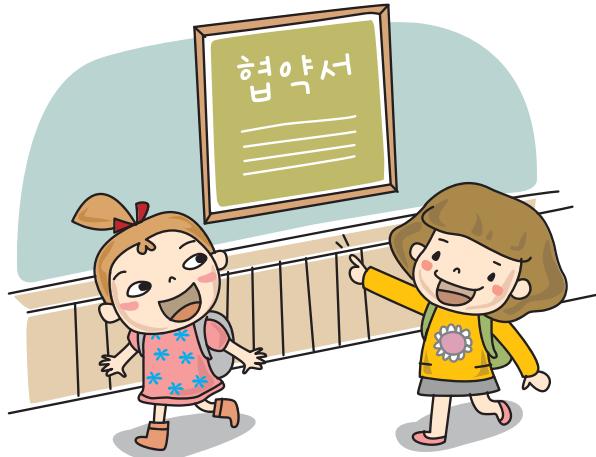
-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 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 ⑫ 항상 밝게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 3) 학부모의 약속

- ① 학교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 한다.
-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 ⑨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년 ○월 ○일  
○○ 초등 학교장

※ 위 예시는 ○○고등학교의 '3주체 공동체생활협약'의 내용을 초등학교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 사례1

## 학생생활협약 제정 절차(○○초등학교)

## ▶ 협약제정절차

| 절차 | 학생생활협약 주요 내용 및 운영(안)         |   |
|----|------------------------------|---|
| 1  | 방과 후 전교어린이회 개최<br>(장소 : 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협약에 대한 홍보물 배포</li> <li>- 학생임원들의 의견수렴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li> </ul>   |
| 2  | 생활협약 PPT 자료 발표<br>(전교어린이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회장은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여 방송실에서 준비된 자료를 발표(5분)</li> <li>- 방송 후, 각 반 회장은 포스트잇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생활 협약에 대한 소감을 적어 하드보드지에 붙여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li> </ul> |
| 3  | 학급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약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여 학급에서 꼭 지켜야 할 생활 규약을 포스트잇에 적어 하드보드지에 붙여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li> </ul>  |
| 4  | 생활협약 홍보<br>(전교어린이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을 제작하여 교문, 급식실 출구, 신발 갈아 신는 곳 등 홍보물 부착</li> </ul>   |
| 5  | 학급생활규약 8가지 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4일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학급에서 꼭 지켜야 할 8가지 생활규약을 뽑도록 한다.</li> </ul>  |
| 6  | 반별 생활협약 내용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회장이 반별 회의결과를 발표한다.</li> </ul>  |
| 7  | 학부모 총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생활협약 추진팀 구성</li> <li>- 교사 생활협약 추진팀 구성(생활교육 T/F)</li> </ul>   |
| 8  | 참여 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협약 관련 프로젝트 수업 추진 : 포스터, PPT,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노가비), 모둠별 토론 등</li> </ul>   |
| 9  | 학생 간부 수련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협약 토론회</li> </ul>  |
| 10 | 학년별 공청회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급에서 나온 8가지 생활협약을 근거로 학년별로 공청회를 실시(강당에서 토론회 실시)<br/>→ 학년별 8가지 생활협약 확정 → 학년 토론이 끝나면 학년별 대표들이 모여 토론 → 투표 → 생활협약 8가지 확정</li> </ul>          |

## 사례2

## 공동체 생활협약 추진과정(○○초등학교)

## 학생의견 수렴(2. 25. ~ 26.)

3. 4월에 임시로 준수해야 할 공동체 생활협약을 잠정적으로 정함



## 각 주체별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 ① 학생 의견 수렴(3. 28. ~ 30.)

학급자치회, 전교어린이회 주관으로 학급을 기초단위로 학생과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교어린이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여 학생 협약안을 정함.

## ② 학부모 의견 수렴(3. 21. ~ 25.)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회에서 토론하여 학부모 협약안을 정함.

## ③ 교사 의견 수렴(3. 21. ~ 25.)

교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회에서 토론하여 교사 협약안을 정함.



## 공청회 개최 : 4. 3.(토)

강당에서 각 주체별로 2명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호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

(전교생이 모두 모일 수 없을 때는 교내 방송을 활용하여 공청기회 제공)



## 공청회 후 이견에 대한 주체별 의견 수렴

- 교사의견수렴 : 4. 15.(금)
- 학생의견수렴 : 학생의견수렴 : 학급회토론(4.4. (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전교대의원회토론(4. 8.(금))
- 학부모의견수렴 : 5. 16.(월)



###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안) 확정

가) 각 주체대표가 수용한 생활협약(안) 확정

나)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 ①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는 교사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 한다.
-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약속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 ④ 공동체 생활협약의 상습위반자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내 봉사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사례3

##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4대 규칙(○○초등학교)

## 1) 운영 목적

학급 내에 존재하는 위계서열과 왕따,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을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만들어 예방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또한, 아이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기해자와 방관자를 공동체 활동의 참여자로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운영 절차

| 단계             | 주요 실천 내용   |
|----------------|--|
|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직원 연수(3월 초)</li> <li>▶ 학급 규칙 제정을 위한 학급 총회 및 공동학습주간 운영</li> <li>▶ 학급 담임과의 대화(규칙 제정 및 멈춰 제도의 운영 연수)</li> </ul>  |
| 학부모<br>연수 ·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학급)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li> <li>▶ 학부모 총회 시 멈춰 제도의 학부모 연수 실시</li> </ul>  |
|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롭힘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계획 공유</li> <li>▶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 공유</li> <li>▶ 멈춰 제도 학급단위 아동 교육 실시</li> <li>▶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위한 환경 구성(교실, 복도)</li> <li>▶ 학급에서의 멈춰 제도 실시</li> <li>▶ 설문 조사 실시 및 학교 차원 괴롭힘 대처 방안 모색</li> <li>▶ 담임교사 간담회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li> </ul> |
| 학생 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상담</li> <li>▶ 학급 내 규칙에 의한 학생 스스로 선도 활동</li> </ul>   |

## 3)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

-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도울 것이다.
-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 만약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 ※ 가정통신문 양식

###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집단 괴롭힘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초등학교

올해 본교는 ‘집단괴롭힘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우정과 배움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4대 규칙’과 ‘멈춰 제도’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과 서로 합의된 방법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집에서, 학원에서, 동네에서 아이들의 괴롭힘 상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개입하여 지도해 주십시오.

#### 〈멈춰 제도〉

- (1) ‘멈춰!’를 외치고 괴롭힘을 그만두게 한다.
- (2)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돋는다. 어깨를 두드려 주는 등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이제 괜찮을 거야.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등의 공감하는 말을 한다.
- (3) 괴롭히는 학생에게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고, 괴롭힘 방지 규칙을 이야기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해주겠니?”, “네가 발로 찬 것은 괴롭힘이야. 규칙을 어긴 것이고 무척 심각한 일이야.”
- (4) 방관자들이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을 도우려 했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행동했다면 그들을 격려해 준다.
- (5) 괴롭힘 당한 아이에게 앞으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 (6)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 알려 교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4대 규칙’〉

1.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도울 것이다.
3.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4. 만약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 ※ 부모님 서약서 양식

## 평화교육 부모선언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 삶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면 마음 바탕이 같고,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공감하는 마음씨가 생겨야 하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 생겨도 공감하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에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거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와 그 부모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와 부모는 자신을 방어하기 바쁘거나 방어행위 자체를 비난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폭력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언론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룰 뿐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큰 사건이 생길 때 마다 피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면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지도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경찰에 맡겨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우리 부모들의 태도를 반성하며, 가정·학교·사회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주체적 참여자로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약속

1. 우리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지 않게 가르칠 것입니다.
3. 우리는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4. 우리는 우리 아이가 혼자 떨어져나가기 쉬운 다른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5. 우리는 우리 아이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6. 우리는 위의 약속을 교사와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평화로운 가족문화·사회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년 ○월 ○일

이름 : \_\_\_\_\_ (서명)

○○초교(교장 ○○○)는 교총의 이 같은 범국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일(목) 오전 11시,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다짐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초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약 1,600명이 함께 참여하는 선언식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예방,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의 구축, ▲현장 중심의 생활지도로 안정된 학습분위기 조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을 다짐하였다.

행사진행은 전교생과 학부모 교원이 강당에서 선언식을 진행하게 되며, 교사는 ▲어린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제자들의 인격을 존중, ▲토의·협력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학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학생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 ▲친구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쓸 것, ▲친구의 인권도 소중함을 알고, 차별이나 따돌림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학부모는 ▲내 자녀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내 자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학교규칙을 성실히 지키고,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지도할 것,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배려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것,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 인권을 존중하는 뜻으로 존댓말 사용,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선포할 예정이다.

○○초교 교장은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식이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구성원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더불어 '실천적 행동을 위해 교사는 선언문을 교실에 비치하여 매일 읽고 숙지함은 물론, 학생들은 생활기록장 겉표지에 부착, 매일 다짐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부모는 가정에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육신문사, 2012. 2. 2.

##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선언문 양식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언문**

○○초등학교 교사 은(는) 미래를 짚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돋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교사)**

첫째, 나는 어린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제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토의·협력 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학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 교사 (인)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언문**

○○초등학교 학생 은(는) 나라의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주인공으로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학생)**

첫째,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친구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셋째, 나는 친구의 인권도 소중함을 알고, 차별이나 따돌림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 학생 (인)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언문

○○초등학교 학부모 은(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친구와 더불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우리의 다짐(교사)

- 첫째, 나는 내 자녀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나는 내 자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학교규칙을 성실히 지키고,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셋째, 나는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부모 (인)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초등학교 선언문

○○초등학교 교육가족 모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평화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 첫째,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배려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 인권을 존중하는 뜻으로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 셋째, 우리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초등학교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이제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들 마음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사랑과 평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일동

## 사례4

## 학생·학부모·교사 한자리 모임을 통한 협력적 학교문화 만들기(○○초등학교)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 교육과 교수·학습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모임’ 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실천해야 할 일을 정리하였다.

**더 멋진 ○○공동체를 위한 어린이 약속!**

○○년 ○월 ○일

**1.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 학교에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먹을거리만 가져옵니다.

**2.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 급식실에서는 소곤소곤 말을 합니다.
- 도서관에서 뛰놀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 복도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3.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 욕은 하지 않습니다.
-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는 가지고 와도 전원은 꺼 놓습니다.
- MP3 플레이어, 게임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4.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 통학차 안에서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 상의 없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5.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 서로 협력하며 배웁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은 집중하여 듣습니다.

## 학부모의 약속

### 학교에서

1. 학부모 '다모임' 시 엄마, 아빠 중 1명은 꼭 참석한다
2.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더불어 사는 교육을 지향한다.
3.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돋는 학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차량도우미 필수, 다모임 참석, 학교도우미활동)
4.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가정에서

1. 자녀와의 대화를 생활화하고 한 달에 한번 학교에서 정한 주제로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
2.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존중한다.
3.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다하게 한다.
4.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 사회에서

1.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2.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입시경쟁교육을 추방하고 학교가 보다 인간적이고 즐거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한다.
3. 우리는 북한 동포가 질시와 반목의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힘을 모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할 민족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 교직원의 약속

- 하나,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 둘, 학교의 구성원이 서로 돋고 협동하는 학습 원리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셋,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 넷, 의사결정시 학생 및 학교의 교육 가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 다섯, 학생의 인격을 존중한다.
- 여섯, 학생 자치를 존중하고 돋는다.
- 일곱, 동료 교직원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교직원 상호간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 여덟,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동반자다. 학부모회의 의사는 물론, 학부모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출처 : 전교조전남지부(2010). 학교혁신을 위한 연구실천 교재.

## 사례5

## 학교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독일)

## 학교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

## 학교 관리자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예의 바른 말씨로 대한다.

모든 학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학생, 학부모, 동료의 관심사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인다.

이해 관계가 상충할 때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애써야 한다.

## 교사

모든 학생을 친절하게, 또 이해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한다.

학생을 대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심, 침착함, 유머를 잃지 않는다.

언제라도 학생, 학부모와 대화할 자세를 가지며, 격려, 문제 제기, 비판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한다.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칭찬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공동 생활을 침해할 때 단호하게 대처한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준다.

## 학생

항상 급우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친절하게 대한다.

모든 유형의 폭력을 거부한다.

외모나 출신, 학교 성적을 이유로 급우들을 따돌리지 않는다.

김나지움에서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업에 충실하고 책임 의식을 갖는다.

공동 소유물과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다룬다.

우리를 대표하여 책임을 위임받은 급우들을 돋는다.

## 학부모

지나친 개인적 기대로 인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도움, 조언, 지원해주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해심을 갖고 대처한다.

학교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

아이들의 교내·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

학교의 교육적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조건 없이 지지한다.

\* 독일 '플라시두스-렌츠 학교 규범집'에서 발췌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



**사례6****핀란드 Ressu Comprehensive school****수업 및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

- 1) 수업의 시작과 끝마침은 반드시 학칙에 따라야 한다.
- 2) 수업 중에는 모두가 서로에게 친근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 3) 모든 학생은 제시간에 자신의 수업교실에 도착해야 한다.
- 4) 수업 중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학생들은 수업일 중 선생님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6) 본인이나 다른 학생에게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선생님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 7) 모든 학생에게는 학교 물건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 물건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손상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 8) 학생들의 음주나 흡연은 금지된다. 핀란드 법률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학년생활규칙 : 1 ~ 6학년**

- 1) 보통 수업일의 경우 아침조회는 자기반에서 갖는다.
- 2)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학교 밖 운동장으로 나가야 하며, 교실안에서 쉬는 것은 선생님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 일 때만 허락된다.

**학교생활규칙 : 7 ~ 9학년**

- 1) 아침조회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학교 밖 운동장에서 보내야 한다. 본관 입구 안 복도주변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허락된다.

### 학생자치규정

- 1)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든다.
- 2) 내가 대우 받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우해 준다.
- 3) 학교 및 다른 사람의 소유물(물건들)을 존중한다.
- 4) 수업시간에 MP3플레이어, 휴대전화 및 다른 전자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다.
- 5) 사진은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찍을 수 있다.
- 6) 모자는 쉬는 시간동안만 착용할 수 있다.
- 7) 수업시간에는 껌을 씹을 수 없다.
- 8) 점심 먹는 공간과 구내식당을 깨끗이 사용한다.
- 9) 말을 공손히 하며 욕설을 하지 않는다.
- 10)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11)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12) 다른 사람의 숙제나 작품을 베껴서는 안 된다.

출처 : 김병찬 (2012). 해외학교규칙 제정 및 운영사례 – 핀란드 편. 「교육개발」봄호,

### 기획·총괄

이 진석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박 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문 진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  
최 성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사)  
양 미향 (법제처 대변인)  
손 문수 (법제처 부대변인)

### 집필진

김 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 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 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남규 (경수초등학교 교장)  
김 성기 (인천 계산고등학교 교장)  
유 석범 (잠일고등학교 교감)  
설 선국 (장원중학교 교사)  
이상민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지도과 장학사)

### 자문 및 검토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공숙자 (인천 정각초등학교 교감)  
이지혜 (서울 한서초등학교 교사)  
류인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박형근 (서울동원초등학교 교사)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감수

오승걸 (남서울중학교 교장)

### 디자인 및 일러스트

신혜진 (책임 디자이너) · 김현주 (일러스트레이터)  
이환희 · 최한나 · 안초원 (디자이너)



서로를 위한 약속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 개정판 |

인 쇄 2014년 2월

발 행 2014년 2월

발행인 서 남 수

발행처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자인 (주)계문사  
02-725-5216

인쇄처 아르빛  
02-503-3223

※ 무단복제 방지. 모든 판권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